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21455
등록일자	2015.6.17.
결재일자	2015.6.1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아동청소년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환경국장
김미경	송정자	유정택	전결 06/17 유용렬
협 조			

2015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계획



복지환경국
여성가족과

2015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계획

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 및 방향

□ 추진근거
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(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),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- 2015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□ 추진방향

- 생계·건강·학업·상담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
- 다른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직접 지원

II 사업개요

□ 지원대상

- 만9세 이상 ~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-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
지원기간

- 1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
단, 학업과 자립지원일 경우 2번 연장 가능(총 3년 지원)

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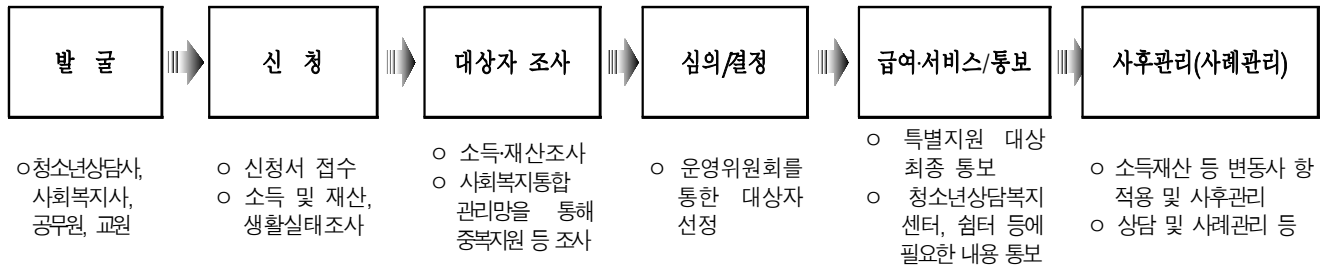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내용	지원금액	지원방법	비고
생활지원	기초생계비, 숙식 제공	월 50만원 이내	매월 1회	20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현금 급여기준(1인)
건강지원	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 그 밖의 치료, 입원 등	연 200만원 내외 (220만원 한도)	1년 또는 매월	
학업지원	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	월 15만원 이내 (수업료, 학원운영비) 월 30만원 이내(검정고시)	월1회, 분기별, 1년 등	지방교육청 학교 운영지원비 기준 사설검정고시학원
자립지원	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	월 36만원 이내	월1회, 분기별, 1년 등	
상담지원	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상담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 등) 참가비	월 20만원 이내(상담지원비) 년 25만원(별도, 심리검사비)	월1회, 분기별, 1년 등	사설 상담기관 상담비 등
법률지원	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	년 350만원 이내	1회 지원	
활동지원	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	월 10만원 이내	월 1회, 분기별, 1년 등	
기타지원	외모 및 훈터 교정, 교복 지원 등	운영위원회에서 결정(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)	월1회, 분기별, 1년 등	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

지원방법

- 금전 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
 -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·시설(학원·상담기관 등)에 직접 입금
 - 금전 지원할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계좌로 입금
 -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

2014년 추진실적

연번	사업 대상자		지원내용		
	성명	재학/학업중단	분야	횟수	금액
	합계	총2명	합계	6회	2,560,000원
1	최OO (여)	학업중단	생활지원	4	1,960,000원
2	한OO (남)	학업중단	학업지원	2	600,000원



□ 대상자 발굴 및 신청

- 신청자 : 청소년 본인, 보호자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교원, 공무원 등
- 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, 여성가족과
- 신청기간 : ~ 2015.06.30.(이후 연중 접수)
- 신청서 및 구비서류(서식 별첨)
 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 - 소득·재산 신고서
 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(월급명세서, 전·월세 계약서 등)

□ 대상자 조사

- 조사범위 :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
- 조사내용
 -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
 - 청소년의 생계,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
 - 청소년에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※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범위

- 생활, 건강지원 :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%미만
-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 지원 :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%미만

□ 심의결정 및 선정통보

○ 특별지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역할 :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논의
- 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운영위원회”와 통합 운영

○ 우리 구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운영위원회 미설치로 특별지원 긴급사유서로 대체

※ 시군구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운영위원회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지원 긴급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.
(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및 2015년도 청소년사업 안내(Ⅱ) 158 page)

○ 특별지원 결정 등 통보

- 조사내용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해당 내용 검토, 지원 여부 입력
- 지원 여부 내용을 청소년 본인·보호자·신청인에게 서면통보

□ 사후관리

○ 사회복지통합관리망(행복 e-음)에서 신청자 정보 및 지원내용 등 관리

○ 특별지원 청소년 관리카드 작성

○ 대상자 자격 등 관리

-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, 생활실태, 위기현황
-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(소득·재산) 등
-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(월 1회)

○ 사례관리

-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계약을 작성, 월1~2회 사례관리 실시
- 사례관리계약서 내용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및 연장 등 결정
- 건강, 학업, 상담, 자립지원 대상자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

※ 특별지원 청소년 사례관리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,
우리구는 청소년 상담센터 부재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의뢰

IV

행정사항

□ 소요예산

- 예산액 : 3,000천원 (상반기, 국비50% 시비50%)
※ 하반기 예산은 상반기 지원 실적 및 수요에 의거 차등 지원
- 예산과목 :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·육성, 청소년복지지원,
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, 일반보상금, 사회보장적수혜금

□ 추진일정

- 2015.06.17. ~ 06.30.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신청
- 2015.07.07.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 선정 및 사례관리 의뢰
- 2015.07. ~ 12. 특별지원 실시 및 사례관리
- 2015.12.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(지원 청소년 및 보호자)
- 2016.01. 2015 지원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

□ 유관기관 협조사항

-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신청

기관명	동 주민센터	초·중·고등학교	비정규교육기관	사회복지관	청소년 시설·기관
현황	15개	공립초 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대안학교 3개교	신당야학	중림 신당 유락	중구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

별첨 :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서식 1부. 끝.